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선발 계획 수정 안내

1 목 적

대학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연구 기회를 재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를 구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나. 중원대학교 학칙 제8조, 제13조, 제21조, 제38조, 제45조, 제80조

다. 중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14조 ③항, 제15조 ②항, 제26조, 제104조 ⑤항

3 재입학 자격

가. 재입학 대상: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미등록제적, 자퇴자 포함)

- 2022. 10. 1. 이전 제적자

나. 재입학 제한

1) 징계에 의한 제적자(다만,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락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있음.)

2)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4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재입학 허가 학년 및 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잔여학기

나. 재학연한

1)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남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이전 등록(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 학기 수

와 재입학 이후 이수할 학기 수를 합하여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연한 초과자는 학칙 제8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학적을 상실 함.

5 여석산정 및 선발 기준

가. 재입학 여석 산정(정원 내 · 외 구분) [붙임 2]

재입학 인원 = 직전학기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2022. 10. 1.자)에 명시된 3, 4학년의 제적자 수

1) 1, 2학년 제적자: 일반편입학 여석으로 사용
2) 3, 4학년 제적자: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3) 의료인력 양성학과(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모집단위별 결원 발생시 충원 가능

※ 관련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649(2012. 11. 30.)

▣ 여석산정 방법(의료인력 양성학과 제외)

직전 학기 (2022년 10월 1일 기준)
1~4학년 제적자 수 – (일반편입학 모집인원 + 재입학생 수)
= **3~4학년 제적자 수 –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수**

※ 1~2학년 제적자 수는 일반편입학 모집인원 산정에 사용됨

나. 재입학 선발기준

1)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동일 학년 이하에 선발
2) 재입학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발기준
   가) 제적 전 총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나) 취득학점이 많은 자
   다) 이수과목수가 많은 자

6 허가 학년·학기 기준

가. 제적 전 총 취득 학점을 아래 기준표를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학기를 허가한다.
다만, 교양과목 이수 상한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제외한다.

나. 교양과목 이수 상한학점의 기준은 재입학 예정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교양과목 영역별 최저이수학점 배분표상의 교양과목 이수 상한학점에 따른다.

<재입학 학년 학기 허가 기준표>

구분	졸업 기준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14학번 이전	140학점	17이하	18이상	35이상	53이상	70이상	88이상	105이상	123이상
	수료학점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2015학번 이후	130학점	15이하	16이상	32이상	48이상	65이상	81이상	97이상	113이상
	수료학점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7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8 신청서류

가. 재입학원서(별첨1) : 홈페이지 재입학 공고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기포기 신청자는 학기 포기원 추가 제출)

나. 성적증명서: 인터넷증명서(대학 홈페이지), 주민센터 민원 24시 또는
우리대학 학생원스톱센터(M1-411) 앞 증명서발급기 이용

다. 서약서 1부(별첨2)

라. 학과장 / 학장 의견서 1부(별첨3)

마. 재입학자 이수학기 포기원(별첨4): 해당자만 작성

9 재입학 업무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재입학원 접수 기간	2023. 1. 9.(월) ~ 1. 13.(금)	단과대학 행정팀
재입학 결과 예정	2023. 1. 30.(월)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수강 신청	2023. 2. 7.(화) ~ 2. 13.(월)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등록 기간	2023. 2. 21.(월) ~	
1학기 개강	2023. 3. 2.(목)	

※ 생활관 입사: 생활관 입사 기간에 별도 신청

10 재입학 학점 이수 등에 관한 적용 사항

가. 제적 전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재입학 후의 졸업 소요 학점에 통산하여 인정된다.

나. 학부로 입학하여 제적 당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 내에 전공을 선택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나, 전공 결정 후 제적된 자는 소속 전공으로 재입학하여야 한다.

다.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라. 이미 이수한 학기를 포기하고(학기포기원 별도 작성) 재입학 학년을 조정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마. 재입학생은 조기졸업이 불가하며, 재입학이 승인된 학기에 전과할 수 없다.

바. 제적 전 학사경고자라도 12학점~18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15학번 이전 재입학자는 15학점~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15학점 초과학점에 대한 수강신청을 학사팀에서 직접 신청해야함)

사. 재입학자는 등록금을(입학금 포함)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따라 입학금 금액 및 납부 여부가 결정됨

11 기타 문의 사항

가. 재입학 관련 문의 : 단과대학 행정팀
문의 전화번호: 043-830-(내선번호)

학과(전공)	내선번호	사무실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종교문화재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군사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국제통상학과)	8325	M1 601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경호학과, 연극영화학과 (경영학과), (법무법학과), (무예경호학과)	8326	
소방안전학과, 디자인학과, 말산업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소방방재학과)	8552	M2 704
식품산업학과, 의생명과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식품산업학과), (의료공학과)	8553	
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8554	
간호학과	8676~8678	i 301
임상병리학과, 뷰티케어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의료뷰티케어학과), (AI의료공학과)	8673	M2 704
보건행정학과	8674	
작업치료학과	8674	
항공서비스학과	8476	M1 601
항공운항학과	8477	
무인항공기계학과, 항공정비학과 (스마트운행체학과), (항공기계공학과)	8478	

나. 생활관 입사 관련 문의: 생활관 Tel) 043-830-8242~6
다. 등록금 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Tel) 043-830-8274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

○ 재입학 모집인원 : 총 101명 (정원내 95명, 정원외 6명)

2022학년도 모집단위	2023학년도 모집단위	모집정원 (정원내)	모집정원 (정원외)
한국어교육문화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95	6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과		
무예경호학과	경호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의생명과학과	의생명과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식품제약학과		
식품산업학과			
의료공학과	의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안전학과		
융합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말산업학과	말산업학과		
반도체공학과	반도체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의료뷰티케어학과	뷰티케어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기계공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의료보건대학 (의료인력 양성학과)	간호학과	학과 문의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합계		95	6

※ 정원 내·외 구분 모집함.

※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제적된 인원에 한하여 재입학(전과 전입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모집함.

※ 학부·학과의 조직·명칭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과로 재입학함.

※ 학부·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과 조정된 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음.

※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법무법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는 학칙 부칙(개정 2019.5.28.) 제3조(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재입학과 동시에 전과하여야 함.